

●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-653호

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‘행정절차법’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09월 04일

산업통상자원부장관

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「송·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정(‘14.1월) 이후 10여 년이 경과하였으나, 지원금 단가가 고정되어 지원금 현실화 요구가 증가됨에 따라 물가상승율을 반영하여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’ 14년 법령 제정 이후 ‘23년 까지 소비자 물가 지수(CPI) 상승률(근거: 통계청) 18.5%를 지원단가에 반영, 상향 조정 (별표 2 제1호다목)

3. 의견 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법인·단체인 경우 법인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, 이메일 주소

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라. 보내실 곳

- 주소 : (30118)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,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
- 전화 : 044-203-3931 / 팩스: 044-203-4756
- 이메일 : yys7856@korea.kr